

학생 대상

성희롱·성폭력
피해 대처 매뉴얼

SWUHR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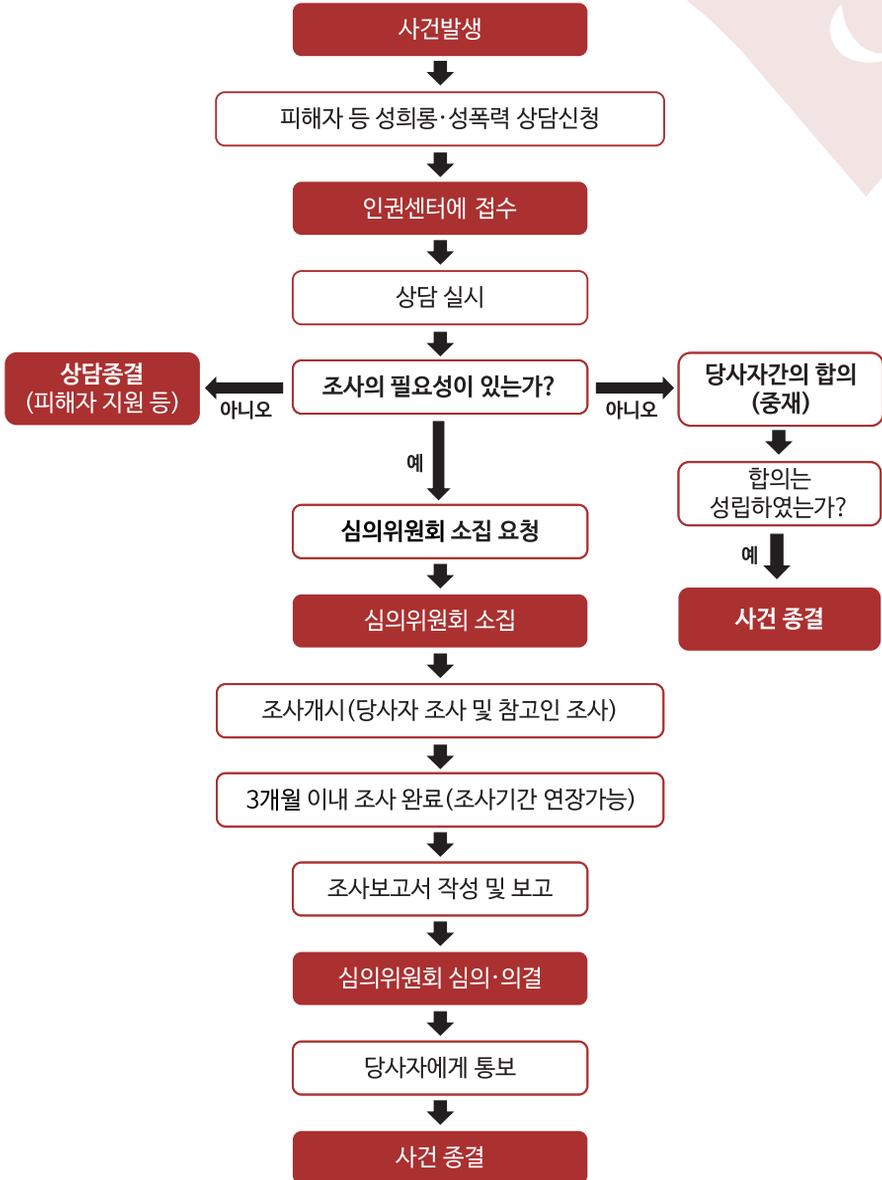


서울여자대학교 인권센터

Contents

- I. 성희롱 신고사건 공식 처리 과정
- II. 성희롱 사건 신고 접수 절차
- III. 성희롱 피해자 대응 매뉴얼
- IV. 성희롱 사건 신고 접수 Q&A
- V. 사이버성폭력 유형별 대처
- VI. 사이버성폭력 대처 Q&A

I. 성희롱 신고사건 공식 처리 과정



Ⅱ. 성희롱 사건 신고 접수 절차

1

인권센터에 상담 신청을 합니다.

- 인권센터에 전화(5331)해서 상담 약속을 잡도록 하세요.
- 본인이나 대리인이 전화, 이메일, 직접 방문하여 상담 후 신고여부를 결정합니다.

2

고충상담원과 예약시간에 상담을 하게 됩니다.

- 성희롱 · 성폭력 피해 발생시에 심리적인 지지를 얻거나 문제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아보기 위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와 상담내용은 철저히 기밀이 보장됩니다.

3

신고 사건으로 공식 접수를 진행할 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 신고사건으로 공식접수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성희롱 사건 신고서 양식에 의한 서면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4

사건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진술서 양식에 따라 육하원칙에 입각하여 정확한 사실 기술을 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 사건 진술 내용의 증거자료를 참고 자료로 함께 제출합니다.

5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 진술을 하게 됩니다.

- 심의위원회가 소집되면 피해자 혹은 행위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 진술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6

사건의 종결

- 본교 규정에 의거하여 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은 신고인, 피신고인에게 서면으로 고지됩니다.
- 후속조치로 피해자 보호 조치 모니터링, 가해자 이행 조치 모니터링, 혹은 징계기관에의 징계요청 등으로 종결하게 됩니다.

Ⅲ. 성희롱 피해자 대응 매뉴얼

01

성희롱이
발생하면

▶ 학내 절차를 통한
해결

▶ 외부기관을 통한
대응

Step1. 성희롱이 발생하면

- ‘성폭력’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과 행동을 수반한 모든 폭력행위를 말하며, ‘성희롱’이란 업무 또는 지위관계를 이용하여 행하는 성폭력(언어적, 신체적, 시각적)을 말합니다.
- 성희롱은 전적으로 행위자의 잘못이지 피해자의 탓이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 성희롱은 인권과 학습권, 근로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이며, 합의 등을 통해 적절한 해결을 할 수도 있지만, 성희롱 문제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를 규율하고 근절해야 하는 문제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성희롱 행위에 대한 거부 의사의 표현은 이후 법적, 제도적 절차 진행 시에 도움이 됩니다.
- 사건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기록하고,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전화통화내역, 목격자 등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III. 성희롱 피해자 대응 매뉴얼

02

성희롱이
발생하면

학내 절차를
통한 해결

외부기관을 통한
대응

Step2. 학내 절차를 통한 해결

- 학내 고충처리 절차 등 성희롱 문제 해결 절차를 숙지하여 적절한 해결방법을 모색합니다.
- 학내 절차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경우 행위자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을 전제로 합의할 것인지, 행위자에 대한 처벌내지는 손해배상을 원하는지 등을 생각하여 자신이 원하는 해결방법을 강구하도록 합니다.

- 인권센터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해서 상담 약속을 잡습니다.
- 고충상담원과의 상담을 통해 공식 신고 사건으로 접수를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신고사건으로 접수를 진행하기로 한 경우, 신고서와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 조사확인을 위한 추가 면담 및 자료 제출, 심의위원회 출석 진술 등을 사전에 안내 받아 진행하게 됩니다.
-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한 안내 및 후속 보호 조치 등에 대한 서면 고지 및 안내를 받게 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대처를 위한 주체별 대응 매뉴얼(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일부 내용 발췌함

III. 성희롱 피해자 대응 매뉴얼

03

성희롱이
발생하면

▶ 학내 절차를 통한
해결 ▶

외부 기관을
통한 대응

Step3. 외부기관을 통한 대응

- 학내 인권센터를 먼저 이용하여 해결을 도모한 다음, 진행 사안에 따라서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외부 기관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외부 구제 제도로는 국가인권위원회(국번없이 1331) 진정, 민사소송 등이 있습니다.

- 피해자가 행위자의 언행을 교내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성희롱 피해를 입은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상담기관과 상급자 등과 상의해야 합니다.
- 기관장 또는 관리자가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취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불이익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자료를 확보하여 문제제기를 하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수 있습니다.

IV. 성희롱 신고 접수 Q & A

Q. 사건 관련자가 외부인인 경우에도 학교가 개입할 수 있나요?

- 사건 당사자 쌍방 혹은 일방이 학내 구성원인 경우나, 학내 구성원이 피해자 혹은 행위자로서 관련된 사건인 경우에 신고 접수 처리가 가능합니다.
- 학내 구성원에는 재학생, 정규직원, 시간강사, 파견직원, 대학교육 프로그램에 등록된 자, 휴학생, 논문제출 예정자 등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신고인이 될 수 있나요?

- 신고인은 성희롱 피해를 당하거나, 인지하고 상담기구에 신고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해 당사자일 수도 있지만, 성희롱 사건을 인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고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신고인이 사건 당사자가 아닐 경우, 신고접수에 대하여 피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피해 당사자의 사건처리 의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는 사건처리를 위해 사실관계 확인 등의 피해자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 '키워드로 만나는 대학 성희롱 성폭력 사건처리 가이드'(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에서 일부 내용 발췌함

IV. 성희롱 신고 접수 Q & A

Q. 2차 피해에는 어떤 경우가 해당되나요?

- **주변인에 의한 2차 피해** :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사건내용과 당사자 개인신상을 주변사람들에게 소문 퍼뜨리거나 SNS에 올리기, 피해자의 평소 행실 등에 대한 험담이나 비난, 사건에 대한 선부른 판단, 피해자에게 행위자를 용서 또는 화해하라고 강권하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 **가해자에 의한 2차 피해** : 사건 후 피해자에게 화를 내거나 야단치기, 사건과 관련해서 피해자에게 점수를 낮게 주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하기, 주변인들에게 피해자를 험담하거나 탓하기, 피해자나 그 가족이 원치 않는데 연락하거나 찾아가서 사건 합의를 집요하게 요청하는 행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V. 사이버성폭력 유형별 대처

사이버성폭력 유형

촬영

- 1. 적용법률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2. 예시**
 -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인구가 밀집된 공공장소에서의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촬영
 - 성행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
- 3. 대처**
 - 문자로 112에 신고 접수 가능
 - 지하철의 경우에는 타고 있는 지하철 칸 번호와 이동 방향을 발송
 - 저장하지 않았더라도 촬영한 것만으로도 처벌 가능

- 최근에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계단,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서 신체일부를 촬영하는 사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개인의 인격권과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는 **디지털 성폭력**이라고 합니다.

- 불법 촬영은 물론 촬영 사진을 즐기거나 유폐하는 것은 성폭력 범죄에 해당되며 불법촬영 발견시에는 경찰에 즉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일부 내용 발췌함

V. 사이버성폭력 유형별 대처

사이버성폭력 유형

유포

- 1. 적용법률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 2항, 3항**
(3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2. 예시**
 - 누드촬영물, 자위영상, 성적인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
 - 동의 하에 촬영한 성적인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
 - 동의 없이 촬영한 성적인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
- 3. 대처**
 - 유포 플랫폼과 원본확보, 확인필요
 - 삭제지원 가능한 기관 및 단체인지 확인
 - 경찰(여성청소년과 또는 사이버 수사대 신고)
 - 단순시청, 저장도 가해 행위에 해당됨

-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동의를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을 유포하는 행위는 범죄행위에 해당됩니다.
- 헤어지는 과정에서 ‘성관계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하거나 이별 후 상대방을 잊지 못하겠다는 명분으로 주변을 맴돌거나 지속적인 문자를 보내는 등의 스토킹 행위는 범죄입니다. 이런 위협을 받고 있다면 피해내용을 잘 기록해두었다가 경찰이나 상담기관에 신고하고 도움을 받으십시오.

※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일부 내용 발췌함

V. 사이버성폭력 유형별 대처

사이버성폭력 유형

유포협박

- 1. 적용법률 : 형법 제30장 협박의 죄**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 2. 예시**
 - 성행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 연인 간 이별시, 이별 후 다른 연인을 만날 때, 혹은 다른 연인과 결혼 후 협박
 -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행위 촬영물을 주고 받은 후 다른 촬영물을 보내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
- 3. 대처**
 - 유포협박 증거자료 확보
 - 스토킹, 물리적 폭력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신변보호 요청 등 제도 활용하기
 - 유포협박 시 비동의 촬영물인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도 함께 적용되나 동의 하에 촬영한 경우는 협박죄에만 해당됨

※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일부 내용 발췌함



V. 사이버성폭력 유형별 대처

사이버성폭력 유형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 1. 적용법률**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형법 명예훼손죄 제310조, 형법 모욕죄 제311조
(1~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2. 예시**
 -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어희롱과 음담패설 및 이미지 전송
 -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성적으로 모욕적인 내용의 글을 함께 게시
 - 게임 내 성희롱
 - 단톡방 내 성희롱
- 3. 대처**
 -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형태의 경우 대화방을 유지하고 있으면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화면에 상대방의 글, 아이피, 아이디, URL, 캡처 날짜 등 가능한 모든게 보이도록 캡처하여 경찰에 신고하기(고소장 접수)

- 1:1 또는 다수의 사람들로 구성된 모바일 메신저 공간에서 누군가를 성적으로 희롱하는 메시지, 사진 등을 주고 받는 행위는 **SNS 성폭력**이라고 합니다.
- 단톡방에서 오고 가는 이야기들은 언제든지 유출될 수 있는 매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글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가해자와의 대화를 원하지 않으면 가해 행위를 즉시 중단하도록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상세한 내용을 경찰 및 수사 기관 등에 알릴 것임을 명백히 경고합니다.
- 사이버 폭력 행위가 증명 될 수 있는 다수의 메일, 게시물, 쪽지, 대화내용 등을 화면 캡처하여 저장해두며 발생경위를 기록해 둡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피해구제 요청(또는 국번없이 1377 전화상담)을 통해서 피해구제 및 법률지원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VI. 사이버성폭력 대처 Q & A

Q. 촬영할 때 동의했다면 동영상이 유포되었을 때 처벌할 수 없나요?

- 성폭력처벌법에 의거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 의사에 반하는 경우, 촬영 당시 동의하였더라도 사후 그 의사에 반하여 배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경우 모두 처벌이 가능합니다.
- 다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피해자의 판단과 다를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그 외에도, 초상권 침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스토킹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지속적괴롭힘]

- 스토킹은 현재 경범죄로 처벌되며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할 수 있고, 강간이나 강제추행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스토킹 피해에 대해 사법적 해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직접적 폭행 외에 가해자가 보낸 이메일과 전화내역, 문자내용 등도 그 내용과 지속성에 따라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잘 확보해야 하며, 경찰에 신고한 기록, 심정을 남긴 일기, 주변인에게 평소 스토킹의 괴로움을 호소한 정황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키워드로 만나는 대학 성희롱 성폭력 사건처리 가이드'(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에서 일부 내용 발췌함

VI. 사이버성폭력 대처 Q & A

Q. 성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 성적 불쾌감이나 공포심,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이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보내는 것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나 다만 문자나 메일 자체에 위와 같은 내용의 문구나 이미지가 있어야 하며, 음란사이트 등으로 연결을 유도하는 경우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또한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항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단, 공포심·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안감 조성행위로 처벌된다면 ‘각각의 행위 간에 일시·장소의 근접성,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성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하나로 이어지는 반복적 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어서 그 의도가 분명할 때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며, 반복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인권센터에서 하는 일

-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과 신고지원 서비스 제공
- 자문 변호사를 통한 성희롱 신고사건 피해자의 법적 문제해결 지원
- 인권센터 규정에 의거하여 피해 상담 접수 및 신고 사건 조사 처리
- 인권/성평등교육(폭력예방교육) 실시, 인권존중 문화를 위한 캠페인 실시, 인권침해 대응을 위한 안내서 발간 등

성폭력 관련 외부 도움 기관

- 서울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 **02)3672-0365**
- 한국성폭력상담소 : **02)338-5801**
- 국가인권위원회 : 국번없이 **1331**
- 여성긴급상담전화 : 국번없이 **1366**



서울여자대학교
인권센터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621 고명우 기념관 202호
전화 02-970-5331
홈페이지: <http://humanrights.swu.ac.kr/>
이메일 : hrc@swu.ac.kr

이용시간 : 월~금 10:00~17: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